

저장	P410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P412 50°C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 위험성	

3. 구성요소의 면적비율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함유량(%)	유해·위험성
1) 다이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2-(2-BUTOXYETHOXY) ETHANOL	112-34-5	5 ~ 10	눈 자극성 : 구분2
2) 액화석유가스(프로판, n-부탄)	-	68476-86-8	< 10	인화성 가스 : 구분1 고압가스 : 압축가스

4. 응급조치 요령

- | | |
|---------------|--|
|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 즉시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하시오.
때때로 눈꺼풀을 들어올리시오.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 다. 흡입했을 때 | 폭로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장소로 이동하여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시시오.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 라. 먹었을 때 |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시오.
즉시 의사나 독극물 통제 센터, 백스인터코퍼레이션(주) 기술제품관리부(031-493-8611)로 연락하시오.
의식이 있을 경우 입을 충분히 헹구고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시오.
의식이 없을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 마. 의사의 주의사항 |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므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오 |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 | | |
|------------------|--------------------------------|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
| 적절한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물 |
| 부적절한 소화제 | 물 분사,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말 것 |
| 대형화재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물 |

화기에 주의하여 취급할 것
사용 후 비누 또는 물로 씻을 것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용기를 뚫거나 변형하거나 소각하지 말것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50°C 이상의 직사광선에 노출아시 마시노.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접지 및 접속 필요.
혼합금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U.S. OSHA 29 CFR 1910.106.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1) 다이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국내규정	TWA – 10ppm
ACGIH 규정	TWA – 10ppm(inhalable fraction and vapor)
OSHA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2) 액화석유가스(프로판, n-부탄)	
국내규정	TWA : 800ppm
ACGIH 규정	STEL – 1000ppm
OSHA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 또는 공정 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하시오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하시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사용 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보호는 최소 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를 필할 것
눈 보호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 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손 보호	장시간 피부의 접촉을 피할 것 적절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신체 보호	적절한 내화학성 안전복(일반작업복 포함)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9. 물리 · 화학적 특성

가. 외관	투명 액체
나. 냄새	약한 에테르 냄새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00°C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성 에어로졸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물과 같음
타. 용해도	물에 녹음
파. 증기밀도	물과 같음
하. 비중(15/4°C)	해당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mm^3/s , 38°C)	해당없음
머. 분자량	혼합물로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정상 조건에서는 반응하지 않음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다.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하시오. 혼합금지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시오.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이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	
라. 피해야 할 물질	
강산, 알칼리, 산화제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제품에 관한 독성정보자료가 없으므로, 구성 성분별 자료를 기재함(참고)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안개나 증기는 목과 폐를 자극 할 수 있음, 고농도는 비강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남용은 해롭거나 치명적일 수 있음

경구 이 제품은 경구 독성이 낮음. 이 물질을 삼키면 입, 목 및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음
다량을 삼키면 장이 나빠질 수 있음

피부접촉 발적, 가려움증 및 피부 작열감과 함께 단기간 노출되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달지 및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음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화학물질의 명칭이 너무 길어 아래와 같이 성분 1, 2로 구분함

성분 1. 다이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성분 2. 액화석유가스(프로판, n-부탄)

급성독성	경구	ATEmix > 5,000 mg/kg 성분 1. LD50 > 5,000 mg/kg (Rat) 성분 2.
------	----	---

경피 ATEmix > 2,000 mg/kg
성분 1. LD50 > 2,000 mg/kg (Rabbit)
성분 2.

흡입 분류되지 않음
성분 1. 자료없음
성분 2.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자료 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분류되지 않음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분류되지 않음

흡인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육생 생태독성

성분 1. 자료없음
성분 2.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 방법 폐유기용제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 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함.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정 : U.S. EPA 40 CFR 262, 유해폐기물 번호 D001 적용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제25, 26조에 의해 규제

나. 폐기시 주의사항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제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개인보호 장비(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안전복, 안전화)착용할 것

빈 용기에 압력을 걸면 파열하는 경우가 있음

빈 용기에 용접, 가열,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면 폭발하여 잔류물이 발화하는 경우가 있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1950

나. 적정 선적명 AEROSOL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2.1

라. 용기등급 자료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 시 비상조치 F-D

유출 시 비상조치 S-U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다이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노출기준설정물질 액화석유가스(프로판, n-부탄)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3호) 제25조에 의해 관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CERCLA 103 규정(40CFR302.4) : 규제대상 아님 SARA 302 규정(40CFR355.30) :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40CFR355.40) : 규제대상 아님 SARA 313규정 (40CFR372.65) :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 VOC 규제 : CARB, US EPA, OTC VOC rule에 준수함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BIT범우연구소 보유정보(원료 공급사의 MSDS 및 소유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나. 최초작성일	2021. 04. 13.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최종개정일자
	0 2021. 04. 13.
라. 기타사항	

본 MSDS에 기재된 의견은 당사와 원료공급사의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시점에서 최신의 정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학제품에는 미지의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에 규정된 위험유해물질들은 존재하는 모든 위험유해물질이 기재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고객 및 잠재고객께서는 본 정보를 검토하시고, 주의사항을 신중히 살펴보셔야 하며, 본 제품의 사용과 폐기에 관련된 적용법과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 오직 제품취급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상의 요구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품의 특정한 성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제품의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의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자료의 사용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전제되어 질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 적합성의 평가는 오직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통상의 취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특수한 취급의 경우에는 용도, 용법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개정될 수 있고, 또한 본 제품의 사용전 제품사양서(카타록)와 포장용기에 부착된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